7. 「대구광역시 시민인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O 청 원 인 : 2·18 안전문화재단 이사장 김태일

O 소개의원 : 김동식 의원

O 제출일자 : 2021년 2월 17일

O 회부일자 : 2021년 2월 18일

O 상정일자: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년 3월 22일), 심사유보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년 4월 14일), 채택

2. 청원 요지 (청원인 : 2·18 안전문화재단 이사장 김태일)

□ 청원요지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건립취지와 유족들의 바람에 맞춰「대구 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에 '2·18 기념공원'을 병기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

3. 청원소개의견서 요지(소개의원 : 김동식 의원)

- 2003년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참사를 계기로 2008년 12월 18일 개관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시비 200억, 화재참사국민성금 50억으로 건립됨.
- O 테마파크 개관 후 며칠 뒤인 12월 28일에 대구시와 대구지하철 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라고 합의함.
- 하지만 이후 13년간 희생자대책위의 명칭변경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18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상황임.
- 따라서 지하철화재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테마파크의 건립의미를 되찾고, 유족의 바람과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2008년 12월 28일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 간의 지하철사고수습(추모사업)관련합의내용 중 일부인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추진한다.'라는 합의 내용 근거에 따라 조례개정을 해 줄 것을 청원함.

4. 소개의원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동식 의원)

□ 소개 이유와 필요성

O 2003년 2월 18일 50대 중반의 한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신병 비관을 이유로 대구1호선 중앙로역에 정차한 제1079열차에 불을 질렀고,

책임자들의 허술한 대응이 이어지는 사이 제1080열차로 옮겨붙은 불은 총 192명의 엄청난 인명을 앗아갔고, 148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를 낳았음.

- 참사는 뉴욕타임스, CNN 등 외신¹⁸)에도 대대적으로 으로 보도 되었고, 참사의 확대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참사는 국제사회의 공분을 가져왔음.
- O 대구시가 이 참사의 당사자이며,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싶음.
- 지하철 승강장이라는 밀폐된 곳에서의 화재는 대형참사로 확산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생활위험이라는데서 지하철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구시는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피해의 회복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
- O 비록 대구시가 참사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대구시민안전 테마파크'를 개관하였다고는 하지만, 현재 테마파크는 '2.18기념 공원'이라는 명칭조차 병기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시설로 운영 되고 있음.
- 더욱이, 대구시는 2008년 테마파크의 개관 당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합의를 통해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18) 18)} The New York Times(Feb. 20, 2003) Final Calls Add to Anguish Over Korean Subway Fire CNN(Feb. 24, 2003) Arrests over Daegu subway disaster

- 희생자대책위 또한, 테마파크의 건립목적에 따라 '2.18기념공원' 이라는 명칭을 병기할 것을 지난 13년간 요구하고 있음.
- 비록 해당지역의 상인회가 상권 보존을 근거로 명칭병기를 반대 하고 있으나, 이는 대다수 지역민의 공분을 유발해,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참사의 복구와 여전히 고통 받는 유가족의 회복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권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와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해가며 발전시킨다면, 상생협력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함.
- 시민안전테마파크는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국민성금에서 50억을 출연하여 건립된 만큼 당초 성금의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2.18기념공원을 병기하는 것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5.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전문의원 신록휴)

O 이 청원은

▶ 2.18 안전문화재단의 이사장인 청원인 김태일이「지방자치법」 과「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요청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것임.

O 먼저, 청원 요청의 배경을 살펴보면,

- ►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는, 진입 중이던 전동차 내 방화에서 기인한 대규모 화재참사로 인해 343명의 사상자(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가 발생하였음.
- ► 대구시는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이하 "희생자대책위"라 한다)의 요구에 따른 추모공간(희생자 묘역, 추모탑, 안전교육관 등) 마련을 위해 2003년 3월부터 수창공원, 대구대공원, 화원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음.
- ▶ 2005년 11월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 측은 조성부지 선정 등으로 난항을 겪던 추모사업을 팔공산에 조성 예정인 대구시민안전 테마파크(이하 "「안전테마파크」"라 한다) 건립계획에 포함하되, '추모관(유골)은 사업에서 제외하고, 위령탑 대신 안전과 추모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희생자대책위 측의 요구에 따라 건립 중인 '「안전테마파크」의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추가 합의하였음.

〈 대구시-희생자대책위 대표(윤석기) 언론공개 합의(2005.11.22.) 〉

- 1.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모관(유골)은 사업에서 제외하고, 위령탑 대신 안전과 추모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 2.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공모 중인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 3. 사업부지는 팔공산 집단시설지구 내 시유지(동구 용수동 89-13번지)로 하며, 대구시는 사업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한다.
- 4.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유가족측은 능동적으로 협조하며, 대구시는 시민안전 테마파크 건립자문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적극 운영한다.
- 5. 기타 사업 추진 시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2.18 유가족 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

〈 대구시-희생자대책위 최종공식 합의(2008.12.28.) 〉

- 1. 안전상징조형물 건립비 일부로 인접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 2. 자원봉사실은 유족들이 요구시 사용토록 한다.
- 3. 유품전시실 전시물에 관하여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전시한다.
- 4.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5. 추모벽 설치는 도시철도공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 6. 재단 설립은 기 합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추진한다.

○ 다음으로,「안전테마파크」건립과정을 살펴보면,

► 2003년 4월 행정자치부는 전국에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설치계획을 수립·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6월 대구시는 전국 유일의 '지하철 화재참사 체험관' 조성을 포함하여 대구대공원에 500억원 규모의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4년 9월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 250억원(국·시비 각 100억원, 국민성금19) 50억원)을 최종예산으로 확정한 후 건립예정지도 팔공산으로 변경하였음.

► 그 후 「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에 희생자대책위 측의 추모사업이 포함되면서 팔공산 주민(비상대책위)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대구시는 '유골·추모(위령)탑 건립 등의 추모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주민의 요구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2006년 6월 팔공산 주민의 건립 동의를 거쳐, 2006년 9월 착공 하고 2008년 9월에 준공하여, 2008년 12월 29일에 「안전테마

〈 팔공산 주민(비상대책위) 요구조건(2005.11.22.) 〉

- 도시개발공사 부지 개발 : 안전교육 및 훈련센터 건립
- 진입도로 확장
- 맞은편 산에 유희단지 조성 지정 등

파크 를 개관하였음.

■ 상기 요구 조건 시행해 주고 유골·추모(위령)탑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수용

• 성금총액 : 721억원(모금 670억원, 이자 51억원)

• 집행내역 : 721억원

- 특별위로금 : 512억원(사망자 411억원 / 부상자 101억원)

- 직접지원경비 32억원(피해자단체지원 28억원, 추모행사지원 4억원)

- 추모사업비 : 177억원(시민안전테마파크 50억원, 안전상징조형물 8억원, 추모벽 5억원, 2.18안전문화재단 출연금 114억원)

¹⁹⁾ 국민성금 현황 및 집행내역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현황>

- 위 치 : 대구시 동구 팔공산로 1155(팔공산 동화집단시설지구 내)

- 규 모 : 부지 29,114㎡, 연면적 6,435㎡

- 사업기간 : (1관) 2004 ~ 2008. 10월

- 총사업비 : **(1관)** 25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국민성금 50억원)

- 주요시설

구 분	1관	2관	야외시설
규모	2/1층 1개동(연 5,843㎡)	2층 1개동(연 592㎡)	대지 3,287㎡
	· 지하철안전체험장	· 화재진압체험장	· 야외전시 · 체험 (소방차량, 교통안전 등)
주요 시설	· 교통안전체험관 (교통사고, 자전거, 도로교통 등)	· 농연 및 완강기 체험장	· 야외 놀이터
	· 미래안전영상관(4D)	· 모노레일 체험장 (대구도시철도3호선)	· 운동시설(족구장, 풋살장)
	· 방재미래관, 다목적실 · 아티홀, 포토존 · 테마쉼터 (북카페, 유아놀이터)	· 응급처치 체험장	· 문화, 집회(야외무대) · <u>부대시설(안전상징조형물 등)</u>

- ► 대구시는 개관 전, 소방기본법 제5조2항20)의 위임에 따라 본칙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2008. 3.25.)하여 '시민들의 긴급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안전테마파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 현재「안전테마파크」는 '지하철안전'을 비롯한 '교통안전'과 '어린이제품안전' 체험장 등에서 소방관들의 재난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감나는 지도로 체험의 만족도가 높아 방문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²⁰⁾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②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O 마지막으로, 청원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 먼저, 청원인 측에서는

- 대구지하철화재 참사를 계기로 개관한 <u>「안전테마파크」건립을</u> 위해 50억원의 국민성금을 출연하였지만 명칭에서조차 지하철 참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음.
- 따라서, 2008년 12월 28일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 간 '<u>「안전테마파크」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추가 합의문과</u> 「안전테마파크」의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가 <u>추모사업활성화</u> 분야 유족들의 1순위 요구사항임에 따라,
- 「안전테마파크」의 건립 의미, 유족들의 바람, 참사의 교훈 기억 등을 위해 「안전테마파크」 명칭에 '2·18 기념공원'을 함께 병기 하도록「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 변경을 청원하고 있음.

▶ 다음으로, 팔공산 주민 측에서는

- 대구시가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안전테마파크」는 지하철참사 추모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건립 당시부터 추모관, 위령탑 건립 등 어떠한 추모시설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으며,
- 건립 당시 유골·추모(위령)탑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대구시와 팔공산 주민(비상대책위) 간의 합의에 따라 건립에 동의 하였고,
- 상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u>「안전테마파크」</u>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추모사업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이 청원은 「안전테마파크」 건립을 비롯한 추모사업 전반에 대한 대구시, 희생자대책위, 팔공산 주민 간 해묵은 갈등에서 기인 하고 있고, 조정자 역할을 하여야 할 대구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희생자대책위와 팔공산 주민 간의 감정의 골 역시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2008년 12월 대구시-희생자대책위 측의 합의문에 따라「안전 테마파크」명칭에 <u>'2·18 기념공원'을 병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u> <u>청원인 측의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u>이 있음.

- ► 그러나, 2005년 11월 팔공산 주민(비상대책위)의 요구조건 수용을 전제로 한 2006년 6월「안전테마파크」건립 동의이므로 조례 개정은 <u>절대 불가하다는 팔공산 상가 번영회 측의 주장 역시</u> 판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음.
- ► 또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16개소(특·광역시 7, 도 9)의 '소방안전체험관'과 6개소(서울 2, 도 4)의 '일반 안전체험관'이 운영되거나 건립 중에 있고 그와 함께「안전테마파크」의 전국적인 인지도도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 제명에 '2·18 기념공원'을 병기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할 경우 그와 연계한 설치·운영 전반에 걸친 조례 본문의 개정 가능성도 높아 「안전테마파크」 건립 본연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

► 따라서,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 개정이라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뚜렷한 이 청원이 의회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별개로,

대구시는 대구시-희생자대책위-팔공산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 하여 각자의 요구조건을 청취하고, 더불어 시민 의견도 충분 히 수렴하여

이 청원 논의의 핵심인「안전테마파크」뿐 아니라 제266회 대구 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4.25.) 시정질문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을 포함한 거시적 관점에서 '추모공간 마련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양 측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 1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 4821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안 전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은 대구시민안 전테마파크(이하'안전테마파크'라 한다)라 한다.
 - ② 안전테마파크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1155(용수동)에 둔다. <개정 2014.5.20>
 - ③ 안전테마파크는 실내체험관 2개 동과 야외시설로 구성되며, 실내체험관은 1관과 2관으로 칭한다. <신설 2015.12.30.>
- 제3조(기능) 안전테마파크는 일반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상체험을 통한 소방안전교육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30.>
 - 1. 가상 화재연출을 통한 농연·암흑 속에서의 대피요령
 - 2. 응급환자 초기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 3. 산불·지진 등 재난체험 및 대처요령
 - 4.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 5. 옥내소화전, 완강기 등 소방시설 활용을 통한 초기 화재진화요령 및 대 피방법 <개정 2015.12.30.>
 - 6.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비상시 대처요령 및 탈출체험 <신설 2015.12.3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안전교육 등 <개정 2015.12.30.>

[제6호에서 이동 <2015.12.30.>]

-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안전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한다. <개정 2015.12.30.>
 - 3.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 ② 안전테마파크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2. 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3.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안전테마파크는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30.>

②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단위인원은 1관 20명, 2관 12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5.12.30.>]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시민의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단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5.12.30.>]
- ④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20명 초과 시에는 20명까지 마다 1명씩 추가되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5.12.30.>]

⑤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4항에서 이동 <2015.12.30.>]

- ⑥ 안전테마파크 1관의 회당 체험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체험시작 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 제7조(이용시간 등)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시간·회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음주 및 취식행위
 - 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 5.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의 발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 시설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② 안전테마파크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안전테마파크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 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기념품점
 -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타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안전테마파크 개관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현황

□ 소방안전체험관(운영 중): 10개소

지역	체험관명	건립 년도	전체 면적	건축비 (백만원)	시 설 내 용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	2010	8,023 m²	41,400	지진, 태풍, 교통사고, 화재, 응급처치, 소방역사박물관, 관람장 등
	광나루 안전체험관	2003	5,445 m²	20,549	소화기, 지진, 풍수해, 연기피난, 응급 처치, 영상관, 교통 등
부산	부산119 안전체험관	2016	7,915 m²	30,000	교통 생활안전, 지하철 다중이용업소 화재, 원전방사능, 해양, 태풍 지진 등
대구	대구시민안 전테마파크	2008	6,466 m²	30,300	지하철, 생활안전, 지진, 소화기, 옥내 농연, 완강기, CPR, 모노레일, 4D
충남	충남 안전체험관	2016	5,795 m²	22,000	고층화재, 태풍, 급류, 산사태, 산불, 지진, 실내화재, 교통사고, 응급처치 등
전북	전북119 종합체험관	2013	8,021 m²	22,100	화재, 지진, 교통, 태풍, 심폐소생술, 위기탈출(고공횡단, 완강기, 헬기구조)
울산	울산소방 안전체험관	2018	7,610 m²	32,750	어린이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선박안전, 응급처치, 지진, 화재진압
대전	119시민 체험센터	2014	2,272 m²	4,439	농연탈출, 소방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지진, 위기탈출
충북	충북도민 안전체험관	2005	569 m²	500	피난기구체험, 연기피난체험, 소화기, 응급처치, 옥내소화전
제주	제주안전체 험관	2020	5,376 m²	25,600	생활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자연재난 선박안전 등 10개 체험시설

※ 건립 중: 6개소(서울, 인천, 광주, 경기, 경남, 충북)

□ 일반 체험관(대형): 6개소

운영주체	지역	시·군·구	명 칭	면적(m²)
서울시 성북구청	서울	성북구	민방위교육장	2,562
경기 고양시청	경기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1,785
경상남도	경남	양산시	시민안전체험관	1,747
포스코	경북	포항시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터	3,600
강원 태백시청	강원	태백시	365세이프타운	15,419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서울	송파구	송파구 어린이 안전교육관	1,586

6.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건립 목적은?	○ 당초 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체험 시설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었음. 하지만 2·18 희생자 추모사업 중 안전교육관이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체험 시설관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두 군데에서 추진 하기보다 함께 추진하게 되면서 시민 안전테마파크가 검토되었음.
○ 조례상의 목적에는 2·18 추모시업의 내용이 빠져있는데? 건립 당시 팔공산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는 무관한 것인지?	○ 시민안전테마파크 추진과정에서 유가족분들과 묘역, 위령탑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음. 하지만 안전교육관을 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2·18참사와 전혀무관하지 않음. 다만 참사의 아픔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승화한 시설로 보시면 됨.
○ 대구시가 유족, 팔공산 주민들과 이면 합의, 이중 약속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 2005년 11월 합의를 하면서 유가족측의 요청사항이 있었음. 이를 부시장님 차원 에서 검토가 되면서 유가족분들이 실제적 으로 이를 합의라고 주장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요청 사항으로 봐야함.
○ 향후 소방본부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 각계각층에서 도와주셨음. 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숙의하면서 상생과 협력의 길을 찾아가겠음
○ 상인동 가스폭발사건이나 개구리 소년 사건 등과 같이 테마파크 외에 독립된 장소에 추모탑 또는 추모공간을 만들 고자 한다면 방법은 있는지? 사건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필요한데, 있다고 하면 만들 방법이 있는지?	○ 추모공간은 중앙로역에 이미 만들어둔 상태 이고, 여러 지역을 검토해본 결과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의 요구가 있으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됨.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팔공산 상인회에서는 2·18기념공원을 혐오시설로 판단하고 방문객이 줄어든 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객관화된 기 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어떨지?	○ 대경연 용역 결과 2·18 추모사업은 지역 주민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지원해주시기 바람.

○ 과정보다는 이제는 결정을 낼 수 있는

노력해주시기 바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의 답 질 벼 ○ 2003년 지하철화재 참사 이후 희생자들을 ○ 지역 주민 반대와 예산 및 기타 여러 가지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으로 어떤 장소를 사유로 인해 당시 몇 군데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되지 않았고, 당시 상황 후보지로 검토해 보셨으며, 검토했던 후보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 최종 에서는 최적지로 시민안전테마파크가 건립지가 되지 못했는지? 선정되었던 것 같음. ○ 김동식 의원님이 임시회 시정 질문을 ○ 상당한 고민을 했지만 단시간 내에 해결 통해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대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유족분들과 으로 별도 추모공간 조성 등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 의견을 내신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분의 해결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 집행부에서는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함. 향후 비전이 있는지? ○ 테마파크 내에 유골이 묻혀있다고 하 ○ 수목장을 위해 특정하게 마련된 공간은 없으나, 일부 유가족들이 조경 시설에 일반 는데? 적인 관습 형태의 산골을 하였음. ○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을 병기한다면 ○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음. 다만 유족분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면서 또 다른 들은 제2, 제3의 장소로 가는 걸 원치 갈등이 예상되는데 소방본부와 시민 않음. 숙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겠음. 안전실에서는 별도 추모공간 조성 등 적극적으로 움직일 생각이 있는지? ○ 2·18기념공원 명칭 병기가 이루어진 ○ 명칭 병기만으로 끝난다면 제2, 제3의 다면 실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갈등은 없을 것이나 예측할 수는 없음. 조례 명칭 크게 달라지는 것은 있는지? ○ 합의서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 2005년 합의시 묘역과 위령탑을 양보하 무엇인지? 는 대신에 합의서대로 충분히 당시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데서 협의가 되었음. ○ 주민투표로 의사를 묻는 방법도 있었을 ○ 상생 합의를 위한 용역 결과에 양쪽이 텐데?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수용을 했는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3의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보는데? 막히는 부분이 생겨 또 다시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상황임.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지적하신대로 여러 대안을 가지고 협의

해나가겠음.

질 의	답 변
○ 다자간의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시는지?	○ 당연히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안타까움, 현재 시의 입장은? 의회에서도 해결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으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해주시기 바람.	○ 현재까지 이해당사자끼리의 문제 해결 이 상당히 어려웠음. 시에서는 양쪽과 많은 이야기를 해왔음. 추모사업을 전적 으로 하고 있는 재단과 희생자, 주민 모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 하겠음.

※ 상세 내용은 회의록 참고

7. 심사결과

O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재석의원 전원찬성)

8. 종합의견

- 본 청원은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에 <u>'2·18 기념공원'</u>을 병기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 2008년 12월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구시-희생자대책위 측의 합의문에 따라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에 '2·18 기념공원'을 병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인 측의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
 - 이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원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

○ 다만, 청원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구광역시, 청원인, 팔공산주민간의 묵은 갈등과 오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골도 깊음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 개정 청원은 채택하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뚜렷하여 그 목적 이 조례 개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하철참사회생자들의 '추모 공간' 마련을 비롯한 '추모사업 전체의 근원적인 문제'를 합리적 으로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대구시는 그간의 행정 불신을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청원인, 유족, 팔공산 주민 간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할 것임.

9. 기타 필요한 사항

O 없 음